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

(이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8
----------	-----

발의연월일 : 2013. 9. .
 발 의 자 : 이강호, 홍성욱, 류수용,
 최용덕, 안영수, 전원기
 의원
 (찬성자 3인)

1. 주 문

-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이후 개선되지 않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13년 7월말 현재 25,580명으로 6개 광역시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특·광역시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광역시 보다 인구수가 361,347명 적은 대구광역시 의원수는 오히려 4명이 많으며, 6개 광역시중 가장 많은 의원정수를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유일하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0,000명을 밑돌고 있음.
-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 및 자치구별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의 불균형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공직선거법」에서 의원정수를 불합리하게 한정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내 자치구·군간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원하든 지역대표를 뽑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3. 이 송 처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새누리당, 민주당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위원의 선거구 획정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만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분할·획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을 줄임으로써 별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입법권자가 「공직선거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인 112명 범위내에서 각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군의회위원의 선거구 획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원정수를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이후 개정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는 2013년 7월말 현재 2,864,951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5,5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6개 광역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17개 특·광역시도를 비교할 때도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의원 1인당 인구수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 보다 인구수가 361,347명이 적은 대구광역시는 의원수가 116명으로 오히려 4명이 많은 현실이고, 6개 광역시중 가장 많은 의원정수를 갖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중 유일하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0,0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불균형은 최근 각 자치단체의 인구수 증감추이를 볼 때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는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지는 자치구·군의회 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선거구 재획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으로서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행정동이 신설되어 의원 1인당 4.5배가 넘는 인구편차를 보이는 선거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인구수 대비 의원정수의 불균형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원정수의 산정에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내 자치구·군간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반목을 조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든 원하는 지역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이후 개선되지 않은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중앙기관(안전행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새누리당 및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 9.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